

안세회계법인 · 829-7575 세계재경저널 *AnSwer*

eAnSe.com • • • 2022/4/25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·計·經營 戰略

증여세는 증여자, 수증자별 각각 따로 신고,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 단일과세

개념, 구분	증여세 신고단위	상속세 신고단위
과세가액 합산		사망시의 상속재산 + 10년 이내 상속인(자녀) 증여재산 + 5년 이내 비상속인(손자 등) 증여재산(법 제13조 제1항)
합산단위 판정	_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상속인(사망자의 직계자녀와 배우자)의 숫자나 실제 상속배분여부 관계없이 모 두 합산
공제적용금액	배우자 : 10년 단위 6억 직계존비속(부모, 조부모 등 합) 10년 단위 5천(미성년자 2천)	① 기초일괄공제 5억(자녀 등) ② 배우자 공제 : 최소 5억≦배우자 실 상 속액≦30억원
실제 신고 예시	증여세는 1,300만원×10%=130만원	사망자(피상속인)의 상속재산 15억원 ① 사망 7년내 자녀에 5억 증여 ② 사망 7년내 손자녀에 3억 증여 상속과세액 = 15억 + 5억 = 20억원임 ①은 10년내 합산, ②는 5년 전의 7년전 손자증여재산이므로 합산 안함